

연봉제 전담직 전임교원 보수 규정

제정 2019.2.27
 개정 2019.06.20
 개정 2020.3.1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‘대학’ 이라 한다) 교직원 보수 규정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연봉제 전임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신규임용 되는 연봉제 전임교원(일반직, 전담직)에 적용한다. 다만, 탁월한 교원을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규정의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연봉제”란 개인의 경력과 업적에 따라 보수를 연 단위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.
2. “연봉월액”이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금액을 말한다.
3. “연봉”이라 함은 기준연봉을 기초로 연봉 협상에 의해 책정된 금액을 말한다.
4. <삭제>
5. <삭제>
6. “기준연봉” 이라 함은 최초 임용시 학력, 교육경력, 산업체 경력 등에 따라 산정되는 연봉을 말하며, 이후 연봉협상의 기준 금액이 된다.(별표 1 참조)
7. “연봉등급(이하 ‘연급’ 이라 한다)” 이라 함은 기준연봉을 정하기 위한 학력, 교육경력, 산업체 경력 연수 산정기준의 합을 말한다. 이때 경력산정은 교직원보수규정의 [별표 1] 교원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한다.

제4조(계약의 체결) ① 교원의 신규 임용 시 임용계약과 별도로 1년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기간 동안 교원업적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봉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- ② 교원의 연봉계약은 [서식 1]에 의하여 총장이 체결한다.
- ③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, 연봉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.
- ④ 연봉계약 만료일 전까지 익년도 연봉의 재계약을 한다.
- ⑤ 임용계약 종료 시에는 연봉계약도 자동 종료된다.

제5조(업무 주관) 교원 연봉 책정에 관한 업무는 교원인사담당에서 관장한다.

제6조(연봉의 산정) ① 연봉은 기준연봉을 기초로 연봉 협상에 의해 책정된 금액으로 구성되며,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② 최초 임용시 기본급여는 기준연봉을 기준으로 연봉 상·하한에 따라 협상에 의해 정한다.
- ③ 보수는 신규 임용 당시 연급 기준 최대 1연급까지 인상이 가능하다.
- ④ 전담직 교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대학 전임교수 재직 기간을 합산하여 호봉제 교원

기준으로 호봉을 재 산정 후 “교직원 보수규정”을 따른다.

제7조(기본급여 책정) 기본급여는 [별표 1]의 기준연봉표를 기초로 연봉협상에 의해 책정한다.

제8조(성과급 책정) <삭제>

제9조(연봉 외 급여) ① 책임강의 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정규교과 강의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초과 강의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보직에 임명될 경우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그 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9조의2(타 규정의 적용) 연봉제 교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의 봉급(또는 봉급액)을 적용할 때는 당해 연봉제 교원의 연급을 교직원보수규정 별표 7의 호봉으로 인정하고, 호봉에해당하는 봉급(또는 봉급액)으로 본다.

1. 법인 정관 제43조, 제44조제4항
2.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 제2호
3.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규정 [별표 1]

제10조(연봉 이의신청) 연봉은 상호 계약과 동시에 확정되며, 책정한 연봉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,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연봉 지급의 제한) 교원의 휴직, 징계, 직위해제 등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, 법인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.

제12조(기밀유지) 연봉계약의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
제13조(관련 규정의 적용) 연봉제 교원은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대학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